

제 883 호

1982. 1. 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 공보관 이 죽 우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 시보

## 차례

### ◎ 조례

제 1591 호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의 임조례 ..... 3

### ◎ 규칙

제 1958 호 : 서울특별시 학원수익처부 담금징수 조례 시행 규칙  
개정규칙 ..... 14

제 1959 호 :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시행 규칙 중개정 규칙 ..... 16

### ◎ 훈령

제 558 호 : 서울특별시 경찰국위임전결규정 중개정규정 (안) ..... 17

제 559 호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정수포상금지급  
규정 중개정규정 ..... 33

제 56 호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심의회 규정 ..... 33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 고 시

제 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사업기간연기)	35
제 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사업기간연기)	36
제 5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변경허가	36
제 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37
제 7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38
제 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고지	39
제 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	39
제 1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조서	40
제 11 호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41
제 1 호 (성북구) :	광고물정비시범가로계획비자구지정고지	43

## ◎ 공 고

제 1 호 (교육위원회)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공고	43
제 1 호 :	수주입업허가증정신설고요령공고	44
제 2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공람정정공고	45
제 3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변경시행공람공고	46
제 4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공고	47
제 5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공고	47
제 6 호 :	도로공사계획공고	48
제 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50

## ◎ 사 : 령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91 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5조의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 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위임의 기준 및 준비사항)

(1) 각 기관에서는 계획수립, 정책적 일 판단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제외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선기판에 위임하여 처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조 (지휘감독 및 책임)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 4조 (사전승인·1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5조 (위임사무) (1) 시장이 구성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2)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 1 장 사무기구			
국별	사무부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내무국	1.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 2. 행정서사업 가. 허가 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다. 사무소 이전, 폐업 재개업 신고 라. 허가증 (재)교부 마. 납정서사회 지회의 보 고사항 처리 바. 행정서사회 지회의 감독  3. 소개 영업자 영업정지처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행정서사업 제5조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행정서사업 제10조 행정서사업 시행령 제13조 제21조 제22조 소개영업법 제6조	구청장
재무국	1. 물품불용 결정 (차량, 지지방재정법 제61조의6 하월, 수도사업, 병원사업 제1항 특별회계 소관 물품 제 의)  2. 주민세 <del>수수</del> 납세 조합의 교부금 제급  3. 마권세징수 교부금지급	지방세법 179조의5 동법시행령 130조의1 지방세법 제234조의14	"
보건사회국	1.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감 독 가. 숙박업 시설등급 결정 나. 숙박영업 허가  다. 숙박업소의 보고요구 및 검사 라. 숙박업시설개수 명령	숙박업법 제3조 숙박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조 숙박업법 제7조제1항 숙박업법 제7조제2항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인 기 관
보건사회국	마. 숙박영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바. 숙박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 사. 숙박업의 휴지, 재개 또는 폐지신고 2. 목욕장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숙박업법 제8조 • 시행령 제2조 • 제4조	구 청 장
	가. 목욕장의 시설등급결정 나. 목욕장업 허가 다. 목욕장업소의 보고요구 및 검사와 개수명령 라. 목욕장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마. 목욕장업허가사항 변경 바. 목욕장업 허가의 휴지 재개 또는 폐지신고 3. 이·미용업소에 대한 지 도 감독	공중목욕장업법 제3조 • 제4조 동법시행령 제1조 공중목욕장업법 제7조 • 제8조 • 시행령 제2조 • 제4조	"
	가. 이·미용사의 업무정지 기분 나. 개설신고 및 이전신고 다. 폐업 및 휴업신고 라. 업소의 등급사정 마. 업소의 검사 및 개 수명령 바. 영업소의 폐쇄명령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6 조제2항, 제7조 제2항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8조 제1항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 8조 제2항 • 제9조제2항 • 제12조 • 제14조	"

국별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사회국	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의 영업행위 인정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 령 제2조, 제3조	
	아. 영업소 명칭등의 변경 신고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 행규칙 제15조	
	4. 사설묘지(화장장, 납골 당) 설치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구청장
	5. 무년분묘 개장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6. 사체운반업 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7.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보건소장
	8.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전염병 예방법 제20조	"
	9. 제1종 전염병 예방시설 의 설치	전염병 예방법 제23조	"
	10. 제1종 전염병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전염병 예방법 제37조	"
	11. 제4종 전염병의 예방 조치	전염병 예방법 제39조 제43조	"
	12. 제4종 전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전염병 예방법 제42조	
	13.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기생충질환예방법 제6조	"
	14. 보건소 지도감독	보건소 설치에 관한 규 정 제3조	구청장
	15.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	의료법 제30조	보건소장
	16. 의료기관 개설허가(신 고) 사항변경	"	
	17.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 제31조	"
	18.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 설 허가사항 변경	"	
	19. 적폐물처리업자 지정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	
	20. 의약품 판매업 허가	약사법 제35조	

국 부	사 드 명	근 거 법령	수임 기관
보건사회국	21. 마약법 제7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마약취급자 면허	마약법 제7조	보건소장
	22. 마약법 제7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마약취급자 면허등록사항 범경신고 및 면허증 재교부	마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23. 마약구입서(판매서) 교부	마약법 제15조	"
	24. 사고마약 폐기내가	마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25. 마약취급자격 실자 소지마약 신고	마약법 제16조제1항	"
	26. 마약 양도승인	"	"
	27. 마약취급자 단속	마약법 제51조	"
	28.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 폐업 등의 신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8조, 제24조	"
	29. 향정신성의약품 사고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7조	"
	30. (안마, 침술, 경구) 시술소개선 신고	간호보조원, 의료유사검자 및 안마사의 관리 규칙 제17조	"
	31.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및 감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국적감
	32.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 단	"
	33. 사회복지법인 임원인가 (단, 사업범위가 2개도 이상인 법인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54-8 제883호 시

보 1982.1.7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임기판
보건사회국	34. 사회복지법인의 임시 이사선임 35.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 업신고 및 변경신고 36. 기증물품의 용도증명발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동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13조 관세법 제28조의6 제 1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	구 청 장
	37.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 3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 및 인가취소, 사업정지처분 39. 의례식장등의 영업허가 및 취소등 40.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41. 사회복지시설 폐지 사업정지 승인 42. 사회복지시설 개선, 사 업정지, 허가취소 43. 시설보호시설에 있는 미 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	아동복지법 제11조 " 제20조 " 제26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 인 지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경제국	1. 제량증명업 및 제량기 판매업 등록 2. 기존공장의 등록 3.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 기재사항 변경신고 4. 제2종 전기공사업 보 고 및 검사 5. 전압 5만V미만, 전력 500kw미만 자자용 전기공작 물에 대한 권한	제량법 제15조 공업매치법 제14조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업법 제33조 전기사업법 제47조 대 지 제51조	"

제 883 호 . 시

보 1982.1.7 54-9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별 령	수임 기관
산업경제국	6.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관한	전기사업법 제 44 조	구 정 장
	7. 고압가스용기, 기기제조 수리업허가 및 지도감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4 조	"
	8. 고압가스용기, 기기, 기구 및 특정설비 수입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1 조	"
	9. 가축전염병 방지 가. 가축에 대한 소독 및 청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 조	"
	나. 감염가축의 격리이동 제한	" 제 8 조	"
	다. 감염가축의 도살처분 명령	" 세 10 조	"
	10. 동물(가축) 병원 개설신고	수의사법 제 17 조 제 3 항	"
	11. 공수의사의 임면	" 제 21 조	"
	12. 종개업 등록	축산법 제 13 조 제 1 항	"
	13.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증교부	" 제 16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1 조 제 2 항	"
	14. 동물용 의료용구 및 위 생용품 판매업 등록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제 8 조	"
	15. 동물약품판매업 허가	" 세 10 조	"
	16. 동물약품 취급신고	" 세 14 조	"
	17.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 10 조	"
	18. 가축 자가사육 증명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
	19.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사료관리법 제 9 조 제 2 항	"
	20. 종묘(채소, 과수) 상등록	종묘관리법 제 3 조	"
	21. 비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	비료관리법 제 13 조	"
	22. 방제비용부담명령서 교부	식품방역법 제 23 조의 3 및 식품방역법 제 23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제 1 조	"

54-10 제 383 호 시

보 1982.1.7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 임 기관
산업경제국	23. 일반방제업 등록 24. 농지개량제 경비부과 인가 . 25. 수산체조업의 신고 26. 어업허가 (신고) . 27. 양곡매매업 (도매업, 소매업) 가. 영업허가 나. 영업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승인 다. 영업폐지신고 라. 행정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등)	농약관리법 제 11조 1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63조 외 3 수산업법 제 45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8조, 제 9조 양곡관리법 제 15조의 3제 1항 " 제 15조의 3제 41항 "	구 철 장 " " " " " " "
도시계획국	1. 도시계획확인원 2. 환지 (화점, 예정지 지정) 증명 3.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지 장물 이전제거 및 보상 4. 사도 개설허가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 위허가 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5 항이내에서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조제 1항 제 1호중 가, 나, 라, 마, 사, 자 및 차목과 규칙 제 2조 제 1항제 2호 나목 및 동조 제 1항제 4호 바, 아 및 차목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면밀사무처리규정 제 2조 제 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0조, 제 41조 사도법 제 4조 도시계획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내지 제 4조	"

제 883 호 시 보 1982.1.7 54-11

국별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국	<p>나. 규칙 제 2조제 1항제 1호 아목 및 동항 제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증축</p> <p>다. 규칙 제 2조제 1항 제 6호중 가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p> <p>라. 규칙 제 3조제 2호중 잡목 촉아내기, 가지치기 및 지장목 지압목, 피해목등의 세거와 종연구시험을 위한 국가기관의 벌채 및 간벌</p> <p>마. 기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포함) 의 시행</p> <p>바. 규칙 제 2조제 1항 제 3호 가목중 농업용 양수장 (17제곱미터 이하) 의 건축 및 증축</p> <p>사. 규칙 제 2조, 제 1항 제 3호 가목중 영내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p> <p>아. 규칙의 제 2조 제 1항 제 3호 가목중 국도, 고속국도, 지방도의 신설확장 및 보수</p>	<p>도시계획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제 21조, 동법시행규칙 제 2조 내지 제 4조</p> <p>"</p> <p>"</p> <p>"</p> <p>"</p> <p>"</p> <p>"</p> <p>"</p>	구청장

54-12 제 883 호

시

보 1982. 1. 7

국별	사무명	근거법명	수임기관
	6.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건축허가 7.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토지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 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 조	구청장
건설관리국	1. 다음에 게기하는 준공 미필기준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권 한(단, 건축법 제5조에 의한 본청 관장 업무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에 의한 사업승인 을 요하는 전축물중 본 청 관장업무 제외) 가. 동법 제3조, 제4조 제5조, 6조에 규정하 는 권한  2. 다음에 게기하는 건축 법상의 권한(연면적 3,000㎡를 넘는 건축 물, 11층 이상인 건축 물, 특전가구 정비지구내 의 건축물 제외) 가. 건축법 제2조제15 호 나목, 제5조, 제6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2항, 제8조, 제9조 의2 제3항, 제42조의 제1항 제1호, 제4호 및 동조 제4항, 제43조 제47조 제2항	준공미필 기준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시 행령 제5조	구청장

제 883 호 시 보 1982. 7. 5.-13.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령	수입기관	
건설관리국	의 규정에 의한 권한 전부 3. 주택 개량 재개발지구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허가 4. 주택 개량 재개발지구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5.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6. 자치관리 기구 신고 및 자치관리 폐지 신고 7. 주택 관리인 업무 신고	도시 계획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도시 계획법 제 4 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 10 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 14 조 내지 14 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 22 조	구 척 장
환경복지국	1. 오물처리시설(소각장, 처분장) 설치 승인 및 준공신고 2. 액상폐기물 정화조 설치신고 3. 액상폐기물 정화조 검사필증 교부 4. 환경보전에 관한 보고 및 겸사증 5. 폐기물 운반신고 6. 폐기물 종말처리 신고 7. 영립계획의 작성 지정 신고 8. 사업신고 9. 사업명령	오물청소법 제 9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1 조 서울 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 제 6 조 오물청소법 제 12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 오물청소법 제 2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 조 환경보전법 제 24 조 환경보전법 제 51 조 제 2 항 환경보전법 제 52 조 산림법 제 8 조 ■ 제 11 조 ■ 제 12 조	구 척 장

54-14 제 883 호

시

보

1982.1.7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명	수임기관
환경복지국	10. 영립계획의 변경 명령 및 인가취소 11. 사업의 정지 또는 대집행 등 12. 사업 대집행확인서 및 산림 소유지 비용 불변 상 확인서 발행 13. 일반개발지역의 개발 명령, 대집행, 대집행자의 교체, 시정개발 대집행확인증서 발행 14. 경영의 험원에 대한 재결 15. 조림의 대행 16. 임목벌채, 산림훼손, 임산물의 출취, 채취등 허가와 신고, 특구 명령 17. 임산 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임산허가등 18. 산화방지를 위한 허가, 산화예방, 산화 경방활동 진화를 위한 조치 19. 보전임지의 조사확정	산림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산림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산림법 제33조 제4항 " 제41조 제3항 " 제90조 " 제91조 " 제97조내지 99조 " 제100조내지 102조 산림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구 청 장
상 하 수 국	1. 하수도 시설공사 및 유지 관리 ( 2개구이상 연결 된 간선하수도 제외 )	하수도법 제8조	구 청 장

제 883 호 시

보 1982.1.7

54-15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력	수임기관
상하수국	2. 공공하수도 사용공고 및 점용허가(본청 타 과와 관련된 사항제외) 3. 점용공작물에 관한 공 사 또는 유지 4. 비관리청 시행공공하수 도공사허가(본청 타과와 관련된 사항제외) 5.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 9조, 20조  하수도법 제 10조  하수도법 제 13조  하수도법 제 24조	구 청 장
교 통 국	1. 노의주차장설치허가(신고) 2. 자동차등록표 교부내행 허가 3. 정비관리자의 해임명령 4. 차령연장허가 5. 노상주차장설치및관리	주차장법 제 12조 도로운송차량법 제 23조 ■ 제 43 조의 6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 제 4조 주차장법 제 7조, 8조	자 드 차 판 리 사 업 소 장 구 청 장
민 방 위 국	1. 민방위대의 동원명령	민방위 기본법 제 22조, 제 28조 및 동법시행 규 칙 제 39 조서 3 항	,
소방 본부	1.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위험물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규정인가 3.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 4. 소방설비업등록 5. 소방용 기계, 기구 판 매신고 6. 방염처리업자지정	소방법 제 15조 소방법 제 20조 소방법 제 7조 소방법 제 30조제 1 항 소방법 제 35조 소방법 시행규칙 제 26 조	소방서장

보 1982. 1. 7

**규 칙**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1. 7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958 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1982. 1. 7

서울특별시장

제 2 조(권한의 위임) 하천수익자부  
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등의 가액결정과 부과  
및 징수등 일체의 업무는 당해부  
담금의 부과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 포함, 이하 같다)  
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과대상구  
역이 2개 이상의 구에 걸쳐 있  
을때에는 시장이 이를지정한다"를 삼

제한다.

제 3 조 제 1항중 "부담금"을 "하  
천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  
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  
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1. 7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959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시  
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및 제 5 조  
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제 3 조의 추천서(제 4호서식)서식  
중 "출장소" 및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조사책임자의 "총부과장"  
을 "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883 호 시

보 1982.1.7 54-17

훈령
----

서울특별시 경찰국위임전결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 1.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⑥ 서울특별시 훈령 제 558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 중 나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lt;별첨&gt;

## 별 표

기능별	번호	전	경	재장	상	부	국	주	장
공통	1	경찰업무계획 및 자침 가. 기본계획 및 자침 나. 일반적 세부사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재난사고, 중요사 건 및 재난사고 발생처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중요간행물간령 및 발표사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직원근태 가. 과·재장급 이상 나. 경위 이상 다. 경사 이하			<input type="radio"/>				
	5	시간외 근무명령 가. 과·재장급 나. 경위 이상 다. 경사 이하			<input type="radio"/>				
	6	경위이하 과내 근무부서 지정		<input type="radio"/>					
	7	경사이하 재내 사무분장지정		<input type="radio"/>					
	8	과소속직원표창상선		<input type="radio"/>					

54-10 제 833 호 시 보 1982.1.7

기능별	번호	전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9	소관업무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		
	10	각종 경찰행정자료조사 및 전기보고	○	○		
	11	각급 정보망 운영			○	
	12	진정 탄원서 등 민원처리 가. 청와대총리실 하명사항 나. 경위 이상의 민원사항 다. 기타 라. 처리결과통지		○		○ ○
	13	출장명령 및 출장복명서 가. 과·제장급 나. 경위 이상 다. 경사 이하			○	○ ○ ○ ○
	14	정보비밀간재배정 및 집행계획				○
	15	파내정보비밀행 및 출단		○		
	16	국내 왕복문서 및 협조사항처리		○		
	17	수합문서처리		○		
	18	수리치 못할 문서의 반려				
	19	소환장 발급	○ ○ ○			
	20	수배 및 해제	○			
	21	재증명 및 확인증 발급		○		
	22	근무일지등 제부책 대장정리				
	23	대외기관에 발송되는 간건 가. 중요사안 나. 경미사안		○		○
	24	유관기관 및 단체등 회의개최				○ ○
경우	1	직원순직 및 사망보고			○	○
	2	직원공상보고			○	
	3	경찰 예식, 익전행사 회의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	○

기능별	번호	건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4	경찰사 면찬			○	
	5	직원후생복지 가. 중요사항 나. 경비사항		○	○	
	6	순직, 사망, 조의금 및 정년퇴직자 전별금자급 가. 계획 나. 각출 다. 지급		○	○	○
	7	직장저축 가. 단체 나. 개인		○	○	
	8	당직 근무지정 가. 경감이상 나. 경위급 다. 경사 이하		○	○	
	9	감독순시 가. 순시계획 나. 순시지정 및 업무처리			○	
	10	자체경비 계획 및 지도		○	○	
	11	직원 진강관리		○	○	
	12	경무협회 운영		○	○	
	13	치안일지			○	
	14	경찰회보 발간			○	
	15	방송실 운영		○		
	16	경찰조직 및 직제			○	
	1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제정 또는 개폐 체정			○	
	18	행정지도개선			○	
	19	경찰기본운영계획 가. 시행계획 수립			○	

54-20 제 883 호

시 보

1982.1.7

기능별	번호	내 용	제 장	파 장	부 국 국장
		나. 수점계획 및 심사분석 다. 월중 업무계획 라. 매월 정보비 배정			○ ○
	20	치안행정감사	○		○
	21	법령질의회시		○	
	22	도서관리 가. 구입신청 나. 도서관리 비치 열람 대출	○ ○		
	23	타기관 법제 문서처리	○ ○		
	24	법령 및 도서배부			○
	25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			
	26	물품 및 공사, 검사보고서		○	
	27	회계 재산증명서류 제출		○	
	28	일일회계 지도 결과보고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	
	29	경찰공무원등의 정원관리			○
	30	경찰공무원 임용 가. 경정급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나. 경감이하의 일면 및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과 다. 경사이하의 임면 및 전보, 휴직, 직 위해제, 복직, 전과 라. 총경이하의 정기승급			○ ○
	31	경찰공무원 징계집행 가. 경위 이상			○ ○
	32	고용직공무원 일면		○	
	33	회계직공무원 일면			○
	34	경찰공무원 비밀취급인가 (Ⅱ급이상)		○	
	35	인사기록관리	○		

기능별	번호	건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36	경찰공무원승 발급 및 흥장 대여, 회수	○			
	37	고용직공무원 채용 및 시험계획		○		
	38	경찰관 제승진 업무관리			○	○
	39	정기 근무성적 등 평정			○	○
	40	승진대상자 명부작성 및 승진임용후보자 확정			○	○
	41	경찰관 채용시험 관리 및 특별채용후보자 추천			○	
	42	윤, 표 ; 및 감사장 가. 훈표창추천 및 자체표상 나. 경찰협조 유공자 감사장			○	○
	43	명예경찰관 위촉			○	
	44	교육 입교자 지정 가. 경정 이상 나. 격위 이상 다. 경사 이하		○	○	○
	45	교육훈련계획 (직장훈련 포함) 가. 기본계획 나. 세부계획 및 평가		○	○	○
	46	해외유학대상자 추천		○		
	47	경찰무도 진흥			○	
	48	공무원 연금 사무 가. 기여금등 정수 및 납입 나. 제대부 및 정수 다. 제 퇴직금(순직, 부조포함) 신청 라. 공무상 요양 승인 마. 서류보완 바. 연금 기록관리		○	○	
	49	공무원 의료보험사무 가. 보험료 징수 및 납입		○		

54-22 제 883 호

시

보

1982.1.7

기능별	번호	건	명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나. 본인 일부부담금 환급		○			
		다. 제급여 신청		○			
		라. 피보험자 자격 관리		○			
		마. 서류보완		○			
	50	세출예산의 편성과 배경					○
	51	국고세입					○
	52	경쟁입찰					○
		가. 공사제조	{ 1,000 만원이상 1,000 만원미만		○		
		나. 물품구매	{ 500 만원이상 500 만원 미만		○		○
	53	결산서 제출			○		
	54	예산증감 조치			○		
	55	국유재산관리			○		
	56	세출예산의 집행			○		
	57	예산요구서 제출			○		
	58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총)보고서			○		
	59	경리관계 사무의 인수인계			○		
	60	동원금식비 지급			○		
	61	입찰등록			○		
	62	자금 배경			○		
	63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계산서					○
	64	과오납금의 정리			○		
	65	계약 실적보고			○		
	66	채권 전부 명령			○		
	67	지출계산서					○
	68	지출 증거서류			○		
	69	징계위원회 운영					○
		가. 경위이상 징계요구					
		나. 경사이하 징계요구 및 처치			○		

기능별	번호	건 명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다. 직할대 및 경찰서 징계업무 지휘감독	○			
	70	비위관련 첨보처리 가. 청와대 해명 나. 경정이상 다. 경위이상 라. 경사이하		○	○ ○	
	71	선행자추천 및 징계대상자 처리 가. 경정이상의 장려 및 채고 나. 경위이상의 장려 및 채고 다. 경사이하의 장려 및 채고		○ ○	○	○
	72	타기 관 출두 및 소환 가. 경정이상 나. 경위이상 다. 경사이하		○ ○	○	
	73	소청 및 소송사전처리 가. 경위이상 나. 경사이하		○ ○	○	
	74	감찰특명사항 조사				○
	75	사정관련업무 가. 월례 보고 나. 파·서·대추진 실적			○	
	76	행정감찰계획수립 실적		○		
	77	감찰·정보비 집행	○			
	78	물품관리 운용		○		
	79	금대여품 출납	○			
	80	소모품 출납	○			
	81	불용품처리			○	
	8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	
	83	물품수급관리계획			○	
	84	재물조사			○	

54-24 제 883 호

시

보

1982.1.7

기능별	번호	전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85	손망실처리			○	
	86	양곡배정		○		
	87	양곡출납		○		
	88	기부체 날승인				○
	89	차량예산운용 및 용품 구입		○		
	90	경찰장비 운용계획		○		
	91	무기 탄약화학장비 출납	○	○		
	92	차량 정기점검 및 수리		○		
	93	차량용품 및 유류 출납	○	○		
	94	차량등록말소신고 및 제속검사 신청		○		
	95	경찰관제 기사 취재요청 승인			○	
	96	경찰청사 활용 승인			○	
	97	신문구독 계획	○	○		
	98	경찰관계영화 활용 협조 승인		○		
	99	경찰악대 대외행사지원			○	
	100	민원서류 접수 배부	○			
	101	미아, 가출인, 분실, 습득, 유실물의 처리	○			
	102	민원상담 (구두, 전화) 처리	○			
	103	민원처리 검열 지도 및 감독		○		
	104	관인 신조 및 개각				○
	105	보존기간 경과문서 폐기처분		○		
	106	우표 수불	○			
보 안	1	사행 행위 허가 가. 신규 허가 나. 허가 갱신				○
	2	신용 조사업 허가		○		○
	3	사행행위 신용조사업무 행정처분			○	
	4	교련용 공기총 지정 신청	○			
	5	사격장 설치허가				○
	6	총포 화약류 판매수리 허가			○	

383 호 시 보 1982. 1. 7 54-25

기능별	번호	전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7	총포 화약류 일시 수입허가		○		
	8	화약류 관리기사 행정처분		○		
	9	총포 화약류 제조수입 허가 진달		○		
	0	총포 소지 허가		○		
	11	불법 수령행위 단속			○	
	12	전당포 지도 단속 및 감독		○		
	13	즉심 업무		○		
	14	즉심 청구 및 (세) 출납		○		
	15	율법행위 및 사회옹기정화지도 감독			○	
	16	산림보호단속 협조 업무 (산화방지포함)		○		
	17	안전검침		○		
	18	안전사고처리		○		
	19	외근업무 지도 감독			○	
	20	방법업무 지도		○		
	21	방법순찰대 지도감독		○		
	22	수상사고방지		○		
	23	무허가 건축물 단속		○		
	24	고출상 지도감독		○		
	25	타기관 고발사건 지도 감독		○		
	26	자활근로대 운영지도 감독		○		
	27	외근 성적평가		○		
	28	호구조사 실시계획			○	
	29	청소년보호 및 아동복지법위반 지도감독		○		
	30	청소년 선도위원회 운영			○	
	31	공연장 지도 단속			○	
	32	소년보호에 관한 상담지도	○	○		
	33	비행소년의 선도보호 및 범죄의 예방지도			○	
	34	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	
	35	청소년선도보호단체 지도감독			○	
	36	각종 허가자의 재검토 및 기재·항 벼경		○		○

54-26 제 883 호. 시

보 1982. 1. 7

기능별	번호	전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교 통	1	교통시설 예산배정계획				○	
	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순시원 운용에 관한 예산집행 계획 가. 안전시설공사 (1) 3,000 만원 - 2억원 미만 (2) 3,000 * 떼만 나. 물품구매 (1) 100만원 - 1,000 만원미만 (2) 100만원 미만		○		○	○
	3	교통 지도 단속계획				○	○
	4	교통 규제관리			○	○	
	5	교통사고방지 대책			○		
	6	교통 운수행정 협의			○		
	7	모범운전자 선발및 자격 취소			○		
	8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단속		○			
	9	교통정보센타 운영 관리		○			
	10	교통사고 처리		○			
	11	교통사고 수배 차량처리		○			
	12	교통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			
	13	교통 기동순찰관리 운용		○			
면 허	1	운전면허시험 실시계획				○	
	2	▪ 시험 출제			○		
	3	▪ 시험 종합성적표			○		
	4	▪ 행정처분(취소, 부활) 결정			○		
	5	▪ 시험 관리	○				
	6	▪ 적성 검사	○				
	7	▪ 개교부	○				
	8	▪ 행정처분	○				
	9	면허시험용 장비 및 기기관리	○				
	10	면허증 4 분실 오손 신고	○				

제 383 호 시

보

1922.1.7

54-27

기능별	번호	건 명	제 장	과 장	부국장	국장
면 허	11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			
	12	전출입 신고	○	○		
	13	경력증명, 무사고증명 발급		○		
	14	면허 개선 교부 (군면허 포함)	○			
	15	국제면허 개선 교부	○			
	16	면허대장 기록 작성	○			
	17	면허증 발급	○			
	18	운전면허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19	운전면허 시험관리를 위한 예산 및 공 사, 용역, 물품제조, 자산취득, 처분교환, 임대차와 신청 가. 1,000 만원 이상 나. 1,000 만원 미만 다. 기타 예산에 관련된 사항		○		○
경 호	1	경호명령 및 행사 경호경비 계획			○	
	2	사태별 경호근무 결정			○	
	3	검문소 및 야간초소 운영 가. 설치 나. 운동		○	○	○
	4	제해 및 기타 경비		○		
	5	검문검색 계획		○		○
	6	다중범죄진압, 병력운용		○		
	7	야간통행증 발급		○		
	8	기마대운영 감독	○			
	9	동원급식비 집행		○		
	10	비상소집		○		○
	11	속도부 정리		○		
	12	청원경찰관 운영		○		
	13	민방위 협조 업무		○		
	14	청원경찰관의 임용승인			○	

54-28 제 883 호 시

보 1982.1.7

기능별	번호	전 명	제장	과장	부목장	국장
	15	청원경찰관의 배치승인		○		
작전	1	작전명령 세회 수립			○	○
	2	전경모집선임 및 배치계획 수립			○	○
	3	전경 징계 면죄		○	○	
	4	전경진급심사 계획 수립		○	○	
	5	전경 자체 신고		○	○	
	6	전경교육훈련 계획 수립		○	○	
	7	전경 수형자 재복무 심사		○	○	
	8	예비군 긴급 동원			○	
	9	지역군사당부 연락관 운영		○		
	10	종합 상황실 운영 지도		○		
	11	전경 소원 수리		○		
	12	전경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	
	13	임시 편성부대 운동		○		
	14	초동 타격대 운영		○		
	15	전경 장재업무 지도 감독		○		
	16	전경 흉장 관리		○		
	17	전경 교육훈련 세부실시계획 및 평가		○		
	18	전경 보급 관리		○		
	19	전경 인사기록 관리		○		
	20	전경 복무수첩 관리		○		
	21	전경 교통운임 후불 및 할인증 발급		○		
	22	전경 대 운영		○		
	23	예비군 무기 탄약 관리		○		
	24	예비군 급식		○		
	25	방위 소집자 운영	○			
	26	중요시설 방호 계획			○	○
	27	중요시설 지도 방문			○	
통신	1	통신장비 배정 및 중설				○
	2	무선전화 교선 약부 지정 및 개정			○	

제 883 호 시 보 1982.1.7 54-29

기능별	번호	전 명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3	통신 자체 출납		○		
	4	통신 예산 집행		○		
	5	통신기기시설, 이설, 철거		○		
	6	통신장비관리		○		
	7	암호자재관리, 배포, 회수, 반납	○			
	8	통신기기 시설 보수	○			
	9	112 및 지령실 업무관리 운영		○		
	10	전문발신	○			
	11	고용직 및 기술공무원 일용 재정		○		
	12	부외전화가입 등인			○	
수사	1	유치장 호송업무 지도교양 감독		○		
	2	수사 지휘사건 수사처리		○		
	3	민원(고소, 고발, 진정) 사건 수사처리		○		
	4	경제사법 수사처리		○		
	5	제영장 청구		○		
	6	수사 및 감식장비 배정 및 관리		○		
	7	우발자 판찰 보호	○			
	8	사건 추송서 처리	○			
	9	압수물의 보관 관리		○		
	10	감식, 검시, 검증	○			
	11	감식자료수집 및 관리	○			
	12	경미한 수사보고	○			
	13	중요수사 업무 계획			○	
	14	범죄수사 및 지도			○	
	15	형사사건 송치			○	
	16	범죄 인지 보고			○	
	17	가환부 품신	○			
	18	병사업무 처리			○	
	19	구속통지			○	
	20	소재 주사 지휘			○	

54-30 제 883 호 시 보 1982.1.7

기능별	번호	전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형사	1	5급이상 공무원 독재 사건				○
	2	6급이하 공무원 독재 사건		○	○	
	3	일반범죄 (강력) 사건 수사		○	○	
	4	초동 수사대 운영		○	○	
	5	수사 지휘사건 수사처리		○	○	
	6	수사비상 배치 훈련		○	○	
	7	타시도 사건수배	○			
	8	공조 제보 업무	○			
	9	사건 추송서 처리	○			
	10	장물 품표 발부	○			
	11	경미한 수사보고	○			
정보 1	1	정보사법 검거 처리				○
	2	첩보 처리 가. 치안 및 경제관련 중요첩보 나. 성보, 통보, 하달 다. 참고		○	○	
	3	신원조사 가. 신원조사결과 특이사항 나. 회보 다. 접수, 하명		○	○	
	4	첩보수집 실적 평가		○	○	
	5	정보기록 관리 운영	○			
	6	정보장비 관리 운영 (사용, 출납, 지원)	○			
	1	대공업무 운영 제회 가. 중요 제회 나. 대공요원 성적 평가 다. 대공요원 전보		○	○	
	2	대공요원 정밀 부여	○			
	3	대공장비 운영 관리	○			

제 883 호 시

四

1982.1.7

54-311

기능별	번호	전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4	대공업 무지도점검			○	
	5	요시 활업 무지도감독 가. 요시·관찰, 정신병자 재분류 조정 및 신규편입 나. 요시업무 확인지도 다. 요시동 전출입 이동 라. 요시 활인 및 경거, 자수, 간첩. 남북, 귀환 어부동향 마. 대공위해분자명 불수배 및 소재 탐지		○	○	○
	6	사회안전법업무 가. 사안조성 품신 나. 보안처분대상자 신고 다. 사안송치 및 결정 라. 대상자동태보고 마. 대상자전출입		○	○	○
	7	국가보안목표 인원보안 가. 시설, 인원 보안진단 나. 시설, 인원특이자 동향 다. 공항 검문 검색 라. 공해 항요원동향	○	○	○	○
	8	대공상황실 운영		○	○	
	9	주민등록업무		○	○	
	10	안전대책 (경호) 업무지도감독 가. 판단서 작성 및 일적위해분자대상감시 나. 안전요원 인사계청 다. 업무점검 라. 기본카드작성 마. 간급신원조사 바. 행불 정신병자, 경호요시수사 사. 유관업체 신원조사	○	○	○	○

54-32 제 883 호

서

보

1982.1.7

기능별	번호	전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아. 가시권고충전 물점검 자. 가시권내 유관기관 서약 차. 안전위해 사법검기 카. 안전위해 서신수사 타. 안전위해 사법통해파악 파. 안전위해 사법시 할대 상자변입	○ ○ ○ ○ ○ ○	○ ○ ○ ○ ○ ○		○
11		간첩검거공작지도 가. 역용공작 나. 간첩검거 다. 중요대공전략정보 라. 정보사방처리 마. 용의공작승인 바. 용의공작(자체) 사. 모의간첩훈련		○ ○ ○ ○ ○ ○	○ ○ ○ ○ ○ ○	○ ○ ○ ○
12		불온전단 벽보처리		○	○	
13		사설조사처리		○	○	
14		직발우편물처리		○	○	
15		밀공계 등 활동		○	○	
16		남국민대공 요원화사업		○	○	
17		거동수상자처리		○	○	
18		북파선전물처리		○	○	
19		긴급신원 조회		○	○	
1		외국인 토지소유권취득허가조사		○	○	
2		외사관제 신원조사(판문점 방문포함)		○	○	
3		한·미 현병신분증 확인		○	○	
4		해외여행자보안교육업무		○	○	
5		외교관 및 외국공관관계업무		○	○	
6		외사관제첩보처리		○	○	
7		불온외국서적 및 불법도입		○	○	
8		외국인 및 외국상사단체등항		○	○	

제 883 호

보

1982.1.7

54-33

기능별	번호	전 명	계장	과장	부국장·국장
	9	외사관계기록·보존관리	○		
	10	외국인 및 교포범죄수사 가. 중요사건 나. 일반사건		○	○
	11	밀항사법단속 및 밀항용의자 감시		○	
	12	공작사건지도 및 조사처리		○	
	13	외국인 및 교포와 관련전정조사		○	
	14	요시찰인 및 불순용의자시찰		○	
	15	외국인도지불법취득조사		○	
	16	출입국자동향	○		
	17	강제송환자수사		○	
	18	교포동향파악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정  
수포상금지급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 1. 6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⑥ 서울특별시 훈령 제 559 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정  
수포상금지급규정  
증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정  
수포상금 지급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제 1 항 제 2 호중 "최고

100만원"을 삭제한다.  
제 3조 및 별지 제 2호서식 중 "제  
41조"를 "제 34조"로 한다.

## 부 칙

이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노선 조정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1.6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⑥ 서울특별시 훈령 제 56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노선 조정심의회규정(안)

제 1조(목적) 시내버스노선 조정업무

를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건설관리국장, 지하철본부장, 해당구청장, 시경교통과장이 되고 필요시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자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제 4 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수 1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수 1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5 조(심의사항 및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내버스노선의 신설폐지
2. 시내버스운영제통의 변경
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심의제례)**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도로, 교량등 각종 공사 및 사고로 인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즉시 조정하여야 하나 심의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
2. 도로, 교량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노선을 임시로 조정할 때
3. 협교통 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심의회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 심의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나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 심의에 참여케 할 수 있다.

제 8 조 (심의록 작성)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하며, 심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밀업무)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관 심의 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수당등의 지급)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운영체계)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록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 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변경 허가(사업기간 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1 호 (81.5. 25)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허가된 성동구 자양동 649-1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 12. 10)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세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시행지: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64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 사업(학교)
3. 사업의 면적: 간이급식소(건물 1동 111.12 평방미터)
4.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성동구 자양동 649

54-36 제 883 호

시

1982.1.7

정청학원 이사장 장선옥	1. 사업의 시행지 :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553-1 의 2 필지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 변경전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차수일 : 81. 5.25	6,790 평방미터 (2,054 평)
나. 준공일 : 81.11.30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553 이종성
○ 변경후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차수일 : 81. 5.25	○ 변경전
나. 준공일 : 82.11.30	가. 차수일 : 80. 8.1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 시정비과로 문의 바람.	나. 준공예정일 : 81. 8.1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 호	○ 변경후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 허가 (사업 기간 연기)	가. 차수일 : 80. 8.15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6 호 (80. 7. 23)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된 성동구 광장동 553-1 번지와 2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도시계 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 허가하 고 이를 고시한다.	나. 준공예정일 : 82.12.30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인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 바람.
1981. 12.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 호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0 호 (80. 11.24)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동고 시 제 103 호 (81.4.6.)로 시행 변경 허가하고 동공고 제 368 호 (81.12.15)로 도시계획사업 (일 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 시행

제 883 호 시

보 1982.1.7 54-37

공람공고한 바 있는 강남구 포이동  
70-3 일대 및 염곡동 335 일대 동  
산마을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의 규정에 의거 도  
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에 배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포이동 103  
일대 및 염곡동 335  
일대

나. 사업의 규모 - 59,417 평방미터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  
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동산마을

라. 변경내용

○ 마을회관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당초 : 393, 변경 : 340

○ 어린이 놀이터 조성

마. 사업기간

당초 80.11.24-81.12.31

변경 80.11.24-82. 6.30

바.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의 노  
개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  
제인의 주소 성명(생략)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로 문의  
바람.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 시행 허가

1. 건설부공고 제 6 호(68.1.18) 및  
건설부공고 제 14 호(79.2.8)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8 호(81.6.  
5)로 도시계획사업 서류 공람공  
고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309 (81  
3. 22) 호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  
가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서 울 특 별 시 장

54-38 제 883 호

보 1982.1.7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영등 1-3 주 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시행
3. 사업의 규모 (면적) : 14,998.4평  
(연면적 : 5,789.2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  
1981.8-1982.2.28
6. 변경 사항
  - 바원국교 교사위쪽 당초 2평에서  
도로폭 8평을 확보 경계 변경  
및 담장시설 변경
  - 운동장 계획고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 의의 권리명세  
(생략)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도  
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  
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34호 (79.10.  
11)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  
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되고  
동 고시제 339호 (80.10.6)로 실  
시계획 변경인가된 강남구 서초동  
261번지 일대 의교판, 꼬풀단지에

태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  
시행령 제 26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호  
(79.12.10)의 관한 위임사항의  
내부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1. 1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서초동 261  
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  
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 3) 사업의 규모 : 92,699평  
(28,041.44평)동일
- 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장
-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

#### 당초 변경

- 가) 차수예정일 : 1980.1. 1980.1.
- 나) 준공예정일 : 1981.12.31 1982.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  
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  
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제 893 호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8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7 호(79.4.24)로 지적승인된 당구 월계동 824-3 번지의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5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사업시행처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5

서울특별시장

보 1982.1.7 54-39

-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824-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염광학원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5,405 ㎡ (1,635 평)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820 이사장 홍인숙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1) 착공예정일 : 사업시행허가후 7년 이내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 부터 1년 이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도봉구 월계동	824-3	답	5,405 ㎡	염광학원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92 호(81.8.5)로 시행허가된 당구 잠실동 체비지 1-1 번지 정신여자중, 고등

학교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79.12.10)에 의거 시행변경허가(사업기간연기)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 5

서울특별시장

54-49 제 883호 시

보 1982.1.7.

가. 사업지 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 채비지 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2) 명칭 : 정신여자중고등학교

다. 사업규모 및 면적

(1) 대지면적 : 42,711.73 ㎡

(2) 시설규모

(가) 기관건물 : 18,443.99 ㎡

(본관, 중학교, 고등학교,  
수워실)

(나) 증축건물

(1) 주용도 : 체육관

(2) 구조 : 철골트러스

(3) 건평 : 1,765.59 ㎡

(1층 1,513.92 ㎡)

2층 251.67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

실통 채비지 1-1

(2) 성명 :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  
사장 박종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당초 : 81. 8. 10-81. 12. 10

(2) 변경 : 81. 8. 10-82. 5. 30

■. 보지조사 및 관계도서 : 생략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 호

####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조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산31번지의  
18필지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하고 동법  
제 33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  
획시설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1. 5.

서 울 특 별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	10	156	길동 163-3	길동 158-5	
폐지	"	1	2	10	160	" 163-12	" 산32-3	
기성	"	1	3	10	90	" 163-5, 6	" 163-12	
폐지	"	1	3	10	20	" 163-12	" 163-12	
폐지	"	2	1	8	53	" 163-9	" 163-12	
신설	"	3	1	6	57	" 163-9	" 163-13	
폐지	"	3	2	6	40	" 산32-3	" 산32-3	
폐지	"	3	3	6	176	" 159-5	" 산27	

제 883 호 시

82.1.7 54-4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검	총 접	비고
폐지	소로	3	4	6	118	길동 153-12	길동산 31	
"	"	3	5	6	124	" 산 28	" 31	
"	"	3	6	6	130	" 169-3	" 27	
"	"	3	7	6	76	" 163-12	153-19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 호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1. 건설부 고시 제 368 호 (73.9.6)  
 제 428 호 (78.12.29), 제 367 호 (73.  
 9.6) 및 제 345 호 (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382 호 (78.11.30), 제 251 호 (79.  
 7.9), 제 76 호 (77.4.30) 및 제  
 146 호 (80.5.19)로 사업계획결정  
 된 을지로 1가구역 제 6 지구, 서소  
 문구역 제 3 지구, 도영구역 제 22,

23 지구, 마포로 1 구역 제 10 지구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가개발과 및 해양구청 시설봉사실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시킨다. ( 관계도서생략 )

1982. 1. 8

서 울 특 별 시 장

## 1. 을지로 1가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 가. 변경결정조서

( 단위 : m<sup>2</sup> )

지구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해설
6	당초	3,628	1,243	30,764	17/4	업무	35%	632 % (현 첨 )
	변경	3,550	-	-	20 층	업무 및 판매	35%	662 % ( 없음 )

54-42 제 883 호 시

보 1982.1.7

## 2. 서소문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 가. 변경 결정 조서

(단위 : ㎡)

지구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주용도	전폐율	용적율	배열
3 당초	9,049	3,620	87,730	17/4	사무실	40 %	670 %	별첨
변경	8,856,2	-	-	24 층	업무 및 판매	40 %	550 %	"

## 3. 도암구역 제 22, 23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 가. 변경 결정 조서

(단위 : ㎡)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용적율	높 이	주용도	배	열
당초 21	1,762						
변경 21	1,741						
당초 22	1,412						
23	1,848						
변경 22	3,210	45 %	670 %	15 층	업 무	○ 각 건축선에서 5미터이상 ○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이상 확보	
당초 24	1,983						
변경 24	2,014						

## 4. 마포로 1 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 가. 변경 결정 조서

(단위 : ㎡)

지구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주용도	전폐율	용적율	배 열 (벽 면 선)
당초	3,156	1,105	20,523	13/3	공동주택	35 %	520 %	별 첨
변경	3,277	-	-	15 층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판매 시설	45 % 이하	500 % 이하	○ 20m 전면도로에서 8m 이상 ○ 건축선에서 3m 이상 ○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확보

제 883 호 시

보 1982. 1. 7 54-43

## ◎ 성북구청 고시 제 1 호

## 성북구 광고물 정비 시범 가로재획 정비지 구지 정고시

## 1. 계획 정비지 구

로선명	구간	연장	비고
고 산로	화월곡동 143 번지 (미아삼거리) 부터 종암동 30-69 (홍릉입구)	2.2km	

- 가.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재획정비지구를 위와 같이 지정 고시한다.
- 나. 재획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 신규제작 및 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 관제되는 도적는 당구청 견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2. 1.

성 북 구 청 정

## 공 고

## ◎ 서울교위 공고 제 1 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 공고

교육공무원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32.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1. 수당지급 대상자

공립 초·중등 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의 연령과 경력에 해당

## 당하는 자

## 가. 연령

1) 60세 이상

2) 신체, 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55세 이상

## 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 통산)

1) 30년 이상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

나) 재직중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자

다) 재직중 시·도 단위 이상의

54-44 제 883 호 시

보 1982.1.7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	1.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수출입업체가 전업체
2. 수당지급일 : 82.2.27(토)	2. 신고기간 : 1982.1.14-1982.1. 19 (일요일 제외)
3. 신청기간 : 82.1.10-1.30 (21일간)	3.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청 시민과 (시민홀)
4. 신청절차 : 소정의 신청서, 건강진 단서등 관세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인 소속기관장 및 감독청을 경유 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4. 제출서류 가. 수출입업자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조제1항 또는 제4항) 1) 공통서류 ○ 1982년도 수출입업체증 개신교부신고서 (제1호서식) ○ 수출실적증명서 (제2-2호서 식 : 한국무역회장 확인문) ○ 수출입업체 실태조사표 ○ 무역업자 종람 및 간행자료 ○ 1981년도 수출입업체증사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제조업체 추가서류 ○ 중소기업자 (택일) ※ 자산 5억원이하 또는 상시종업원 300명이하(업 종에 따라서는 500인이하) 에 해당되는 업체임을 입 증할 수 있는 아래서류 • 총자산액은 최근기 결산 대차대조표 1통 (세무시장 확인 (지상광고분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분에 한함) • 상시 종업원은 최근 월분
5. 수당지급액 : 기준호봉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급배 수를 곱한 금액	
6. 지급절차	
가. 대상자의 결정통지 : 대상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장 또는 소속 교육구청장에게 통지 한다.	
나. 수당지급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위 원회	
7.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장 또는 당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란다.	

1982.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 호

수출입업체증개신교부신고령 공고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82년도 수출입업체  
증을 다음과 같이 개신한다.

제 883 호 시

<p>근로소득 계급별 소득액 · 징수명세서 ( 48 호서식 ) 또는 최근월분 소득세징수 액집계표 ( 10 호서식 ) 1통 ( 세무서장 확인문 )</p> <p>·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 입한 중소기업자는 동조 합에 가입한·가입확인서 1통</p> <p>○ 제조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등록확인원</li> <li>○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기 타 특혜업체 ( 무역거래법시 행령 제 1조제 4항제 9호 및 제 10호에 의한 허가 업체는 제외 )</li> </ul> <p>※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자격 유지가 가능하니 아 래 서류를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기업체 : 외 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1통</li> <li>· 기타 특혜업체 : 해당 업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1통</li> </ul> <p>나. 내국 수출입업체 ( 무역거래법시 행령 제 1조제 5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82년도 수출입허가증 개신교부신고서 ( 제 3호서식 )</li> <li>2) 수출실적증명서</li> <li>3) 1981 수출입허가증 사본</li> </ol> <p>5. 1981년도 신규허가업체는 수출 실적에 관계없이 수출입업 자격이</p>	<p>보 1982.1.7 54-45</p> <p>유지되나 개신신청은 하여야 함. ※ 수출입업자의 수출실적 ( 무역거 래법시행령 제 4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업체 : 연간 100만불</li> <li>○ 중소특혜업체 : □ 10만불</li> <li>○ 내국수출입업체 : □ 5만불</li> </ul> <p>6.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서민과 ( 전화 725-3001, 7325 )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업부 ( 전화 771-41 ) 그 문의하기 바람</p> <p>198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p> <p>◎ 서울특별시 공고 제 2 호</p> <p>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공람 정정공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9 호 ( 81. 5.4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방배동산 84번지 12호 490 평에 배수지 설치공사를 시 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에 의거 서울특별시공고 제 383 호 ( 81.12.31 )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 였으나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공란 공고에 올하고자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정정·공고한다.</li> <li>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수도공사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li> </ol> <p>1982.1.5 서울특별시장</p>
--	--

54-46 제 883 호

보 1982.1.7

가. 사업 시행지 : 차오 강남구방배동 산 48 번지 12 일부 400 # 정정 강남구방배동 산 84 번지 12 400 #	라. 사업의 시행자 : 강남구청장 마.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1) 차수예정일 : 1982. 1. 25 2) 준공예정일 : 1982. 6. 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배수지 설치공사) 시행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다. 사업의 규모 : 배수지 약 400톤 (부지 400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와의 권리명세

## 토 지 조 서

구분	위 치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차오	강남구방배동 산 48 번지 12	임야	400 #	서대문구연희동 1 번지 256 호	최 장식	.
정정	강남구방배동 산 84 번지 12	임야	400 #	서대문구연희동 1 번지 56 호	최 장식	.

※ 도면 위치변경 없음.

## ◎ 서울특별시 공고제 3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변경  
시행공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 334호 (78. 7. 5.) 및 동고시 제 348호 (79. 7. 28.)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고 동고시 제 492호 (79. 11. 26.)로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자 명의 변경허가 및 동고시 제 205호 (81. 6. 4.)로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허가 (기간연기) 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주차장)을 변경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년 12월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시행지 : 강남구 양재동 436-2 와 20 월지
- 사업규모 : 22,509 (6,809평) (종합)

제 883 호

시

보 1982.1.7 54-47

다. 사업 차수 및 준공 예정일  
착공년월일 : 1979.11.20  
준공 예정일 : 1981.12.31  
변경 준공 예정일 : 1982.12.31  
라.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전남광주시동구 8-1 (주) 광주고속  
대표 박정구  
마. 공립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 바람.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4 호

특정열 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  
업체 지정취소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조 규정  
에 의하여 아래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  
공업 지정업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2.1.5  
서울특별시장

지정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사유	관련법규
도봉제 34호	대진보일러	한두신	상문동 143-59	무단 전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조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5 호

특정열 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  
업체 지정취소공고  
다음의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업

지정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하였으므로  
동법 제 30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함.

## 가. 다음

지정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46	방용설비사	한상보	성내동 876 브릭 1-가	무단폐업	
41	백제설비	정봉진	성내동 409-46	"	
39	보온설비공사	이하익	암사 1동 555-13	"	
25	동신설비공사	장명수	성내동 9-11	"	

198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54-49 제 883 호 시

보 1982.1.7

● 서울특별시공고제 6호 도로공사계획공고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 한다.					
1.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도로공사		1982.1.7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공사 계획조서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서울특별시도	신림동 108-107간 포장 봉천동 산 81번지 - 81번지 봉천동 411호 3개소	구로전화국주변 포장 봉천 6동 산 81번 지주변포장 봉천로지선도로 포장 신림동 667-668번 지간	관악구청	82.1.20. -82.5.30.			
"	신림동 195-60 - 1부역 봉천동 170-산 1번지	신림 7동 난향국 교주변하수도공사 신림 11동 산 195 주변하수도공사 봉천 7동 산 1번	"	"			
"	봉천동 107부역 - 108부역 - 봉천동 411부역간 봉천동 7-7번지간	봉천 7동 351 번지외 1개소 하수도공사 봉천 2동 7번지	"	"			

제 883 호 시

보 1982.1.7 54-49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비고
서울특별시도	신림동 255~256번 지간	주변 하수도공사 1개소 하수도공사	관악구청	82.1.20. ~82.5.30.	
"	신림동 산 98~산 98 번지	신림 2동 산 98 주 변하수도공사	"	"	
"	봉천동 66~68번지 간	봉천 6동 66 주변 하수도공사	"	"	
"	봉천동 326 부터 ~ 907 번지간	봉천본동 900~ 906간 하수도 공사	"	"	
"	신림동 667, 694, 675	신림 7동 667 외 4개소 하수도 공사	"	"	
"	신림동 산 102~산 102	신림 7동 산 102 주변 U형축구 공사	"	"	
"	신림동 410~412번 지간	신림본동 412 외 3개소 하수도 공사	"	"	
"	신림동 1427~1416 간	신림 5동 1416 외 1개소 하수 도공사	"	"	

54-50 제 883 호 시

보 1982.1.7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비고
서울특별시도 의 5간	봉천동 170-40-173 40-173의 5간	봉천 7동 170의 하수도공사	관악구청	82.1.20. -82.5.30.	

## \* 노 면 생 약

위와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기간중에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공고제 7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제 1호(69.1.8), 서울  
시고시제 445호(81.12.22)로 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시행 대동국교 진  
입로 정비공사 구간내에 저축편입  
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 계  
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람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  
음 한다.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1.12.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람 개 요

- 사업장위치 : 영등포구대림 1,2동  
시점 : 영등포구대림동 861-15 앞,  
832-14, 1036-1 경유  
종점 : 영등포구대림동 1031-14 까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동국교 진입  
로 정비공사
- 사업의 규모 : 폭 20 - 연장 204, 폭 8  
- 연장 376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2.5.31.
-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문의할것.  
첨부 : 토지 조서 1부.

2295

연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부 록 883-14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대림동 1039-14	답	360 $m^2$	360 $m^2$	도로	이문규	목포시 산정동 1050			
2	" 812-18	대	132 $m^2$	132 $m^2$	"	강석길	신탕동 812-18			
3	" 832-12	답	965 $m^2$	145 $m^2$	"	천명수 외 5인	대림동 881	이윤례	대림동 881	공유지분 2/15
								천명수	"	4/15
								천명련	"	2/15
								천명식	"	4/15
								천명임	"	2/15
								천재산	"	1/15
4	대림동 833-1	대	291 $m^2$	291 $m^2$	"	한재윤	신대방동 605			
5	대림동 834-4	답	483 $m^2$	483 $m^2$	"	이윤례 외 5인	대림동 881	이윤례	대림동 381	2/15
								천명수	"	4/15
								천명련	"	2/15
								천명식	"	4/15
								천재산	" 832-11	1/15
								천명립	" 881	2/15
6	대림동 834-5	답	545 $m^2$	545 $m^2$	"	유은자	대림동 856			

1982. 1. 7

1

54-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체인		속유권이의의권 리의종류및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대림동 859-4	담	694 ㎡	694 ㎡	도로	이기홍	예관동 124-2			
8	대림동 858-36	대	1167 ㎡	1167 ㎡	"	민근식	수유 194-12			
9	" 860-31	담	83 ㎡	83 ㎡	"	김덕운	대림동 824			
10	" 861-9	도	489 ㎡	489 ㎡	"	정완현	남가좌동 130-25			
						윤병호	대림동 1064			
11	" 1036-4	담	337 ㎡	337 ㎡	"	이기홍	예관동 124-02			
12	" 1035-2	"	879 ㎡	879 ㎡	"	김창원	적선동 192			
13	" 1034-1	"	112 ㎡	112 ㎡	"	김병대	구로 124			
14	" 1033-1	도	904 ㎡	904 ㎡	"	조용호	신길 119-9			
						김영화	대림 1081-57			
						송정한	구로 436-41			
15	대림동 1631-14	담	165 ㎡	165 ㎡	"	우경호	동승 5048			
총 계			678 ㎡	2,056 평						

제 883 호

보 1982.1.7 54-53

사 령	령 제 2 호
◎ 1981년 12월 31일자 령제 540호	부 시 장 이 상 연 부 지 리 관
새마을지도파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부시장(차관급)에 임함.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전출 을 명함.	종합건설본부장 지방관리관 안찬희
◎ 1982년 1월 1일자 령제 1호	관리관에 임함. 종합건설본부장에 보함.
강남병원 지방간호기사보	기획관리실 김진희 이사관
서대문병원파견 (82.1.1-82.6.30)	관리관에 임함.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보	◎ 1982년 1월 4일자
강남병원파견 (82.1.1-82.6.30)	강남구총무국 기방서기관 김영근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서기관에 임함. 강남구총무국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파견 (82.1.1-82.6.30)	관악구시민국 지방서기관 권석
서울특별시장	서기관에 임함 운수1과장에 보함. 정책조정담당관 서기판 김성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54-54 제 883 호

시

보 1982.1.7

무자관리담당관 서 기 관	박 형 석	중구주택과 지방행정주사	김 주 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중구근무를 명함.	
세종문화회관서무과장 서 기 관	배 병 호	기획관리실 (율림되어기획반) 김 명 현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기획관리실 (율림되어기획반) 근무를 명함.	
대 통령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 1982년 1월 8일자	령제 3호	기획관리실 (율림되어기획반)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이 봉 수		령제 4호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		아동상담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김 전 배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이 종 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		◎ 1982년 1월 11일자 내무국 김영만 이사관	령제 5호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행정주사	박 총 서	국방대학원파견근무를 명함. (82.1.11-82.12.25)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내무국 김원오 부이사관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행정주사	허 옥	국방대학원파견근무를 명함. (82.1.11-82.12.25)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내무국 백상승 부이사관	
		국방대학원파견근무를 명함. (82.1.11-82.12.25)	
			서울특별시장